

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748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. 02. 05. 김석한 의원 등 6인
나. 회 부 일 자: 2024. 02. 14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4. 02. 15.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3966호, 2023. 12. 14.)」 일부개정
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적용을 위해
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의정
활동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현실화 (안 별표 1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제1항,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제1호, 제35조제1항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다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9호
- 입법예고 기간: 2024. 2. 5.(월) ~ 2024. 2. 13(화) [8일간]
- 의견반영 등 조치내용: 의견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3966호, 2023. 12. 14.)」 일부개정
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적용을 위해
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제1항제1호,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
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
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금액이 결정되어 2024년 1월 18일 의장에게
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고성군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더 충실히 임할 수 있는 계기를
마련하고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물가 상승률 반영과 군 재정
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사를 존중
하여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며 구성·체제상의 문제점이 없다고
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7. 토 론: 없음.

8. 심사결과: 2024. 2. 15. 원안가결